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서

2024. 6.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5. 24.(금)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4. 5. 28.(화)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7.(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6. 18.(화)
- 다. 상정일자 :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4. 6.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예산정책과장 남 선 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나. 제출내역

- 수입계획 변경: (예수금수입) 12,148,910천원 증가
 -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수입 증액
 - 일반회계(예비비) 11,075,527천원

-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예비비) 1,073,383천원
- 지출계획 변경: (일반예치금) 12,148,910천원 증가
 - 수입 변동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1. 검토보고

- 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임.
-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난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2. 3. 24.)」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2023년 7월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승계한 것임.
-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통합계정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된 일반회계 잉여금(110억 7,552만 7천 원)과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10억 7,338만 3천 원)을 통합계정으로 전입하여 예수금 121억 4,89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121억 4,891만 원을 증액 운용할 계획으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중 예치금 121억 4,891만 원을 증액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액(47,649,609천원) 보다 **25.5%**, 12,148,910천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 이와같이 살펴본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하는 창구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동 기금은 별다른 지출계획은 없는 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통합기금운용관(예산정책과장) 및 기금을 예탁한 부서에서는 여유자금의 장기간 예치를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다 효율적인 자금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지방재정법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